



제4절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

1 공개대상

□ 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건물

- 본청·의회,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, 읍면동사무소 등 공무원이 사무를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·증축, 재축하는 건물
 - ※ 지방재정법 제6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2조(지자체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)
 - *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, 지방채, 채권,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2 공개기준

□ 신축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시까지 각 단계별로 공개

(1단계) 기본계획 수립 → (2단계) 계약 → (3단계) 설계변경 → (4단계) 준공

- ※ 청사신축 절차(예시) : 기본구상 → 타당성 조사 → 기본계획 수립 → 투자 심사 → 설계 및 수행방식 결정 → 입찰·계약 → 공사수행 → 준공 → 운영·관리
- ① 기본계획 단계는 청사 신축 투자심사(타당성 조사) 및 기본계획 수립 후 공개하고, 그 보고서 원문 등을 함께 공개
 - ※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시 청사 신축 유지관리비 분석결과도 같이 공개
- ② 계약 단계는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전까지 공개
 - 기본 또는 실시설계 후 그 주요장비 등 설치 세부내역 공개
 - ※ 설계·시공 일괄발주 시 계약, 기본설계, 실시설계 등 각 공정별로 그 결과를 수시 공개
- ③ 설계변경 단계는 당초 계획 대비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공개
- ④ 준공 단계는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개